

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[별표 5의2] <개정 2022. 12. 9.>
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준
 (제89조의2제1항 및 제89조의3제1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징금 금액	입찰참가 제한기간
가.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(이하 “부정제공”이라 한다)를 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3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	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13조의3제1항	공사비의 100분의 20 공사비의 100분의 15 공사비의 100분의 10 공사비의 100분의 5	2년 2년 1년 1년
나.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1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	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13조의3제1항	공사비의 100분의 20	2년

의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(이하 “시공외 제안”이라 한다)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			
2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	공사비의 100분의 15	2년	
3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	공사비의 100분의 10	1년	
4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	공사비의 100분의 5	1년	
다.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·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13조의3제1항		
1)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	공사비의 100분의 20	2년	
2)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	공사비의 100분의 15	2년	

3)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 만인 경우	공사비의 100분의 10	1년
4)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	공사비의 100분의 5	1년